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

관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55명”을 “57명”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총계 “650”을 “652”로 하고, 일반직 계 “643”을 “6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14”를 “616”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388”을 “8,422”로 하고, 일반직 계 “7,387”을 “8,48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7”을 “8”로, 3급 또는 4급 이하 “7,354”를 “8,477”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56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명칭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충북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별표 3의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대통령령 제0000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8,481
정무직 계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일반직 계	8,480
고위공무원단	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2
3급 또는 4급 이하	8,446
전문직공무원	4

[별표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41조제1항 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노동정책실 1개 과	5명
2)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정책관등	1명
3) 산업안전보건정책실 1개 과	6명
4) 노동정책실 1개 정책단	1명
5) 노동정책실 1개 과	8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3명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2)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4)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5)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00명
6)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410명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0명
8) 조정 및 심판업무(노동위원회)	50명

[별표 6]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3조 관련)

제43조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6년 4월 12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6급 이하	1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락)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55명</u> 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 ----- <u>57명</u> ----- ----- ----- ----- ----- ----- ----- ----- -----.
제43조(한시정원) ① ~ ③ 삭제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제43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⑥ ~ ⑧ 삭 제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⑩ 삭 제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50</u>	<u>652</u>	+2
·	·	·	
·	·	·	
일반직 계	<u>643</u>	<u>645</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14</u>	<u>616</u>	+2
·	·	·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388</u>	<u>8,482</u>	+1,094
·	·	·	
·	·	·	
일반직 계	<u>7,387</u>	<u>8,481</u>	+1,094
고위공무원단	<u>7</u>	<u>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354</u>	<u>8,447</u>	+1,09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